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
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
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9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처우개선비를 명문화 하여 시비 지원
종사자와 구비 지원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를 없애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여성가족과장, 주소 :
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 : 3396-5422, FAX: 3396-8743,

메일 : 20090304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의 “센터 종사자 인건비”를 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<u>센터종사자 인건비</u> 3. ~ 4. 생략 | 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</u> 3.~ 4. (현행과 같음) |